

생각을 해보면, 잔인한 관습은 아무리 뿌리깊고 익숙한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반대해야 한다. 아무리 미천한 존재라도 그 생명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 그간의 불의를 책임지는 길이다.

- 슈바이처 Schweitzer

기존의 관습에 의문을 품고, 도전하고, 생명에 대한 잔인함을 멈추고픈 수백만의 사람이 존재한다. 인간이 무력하고 연약한 생명을 돕는 일은 동물이 선택하는 것을 아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안의 선함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일이다. 그래서 동물보호는 또한 인간을 위한 것이다.

- 웨인 파셀 (전 미국휴메인소사이어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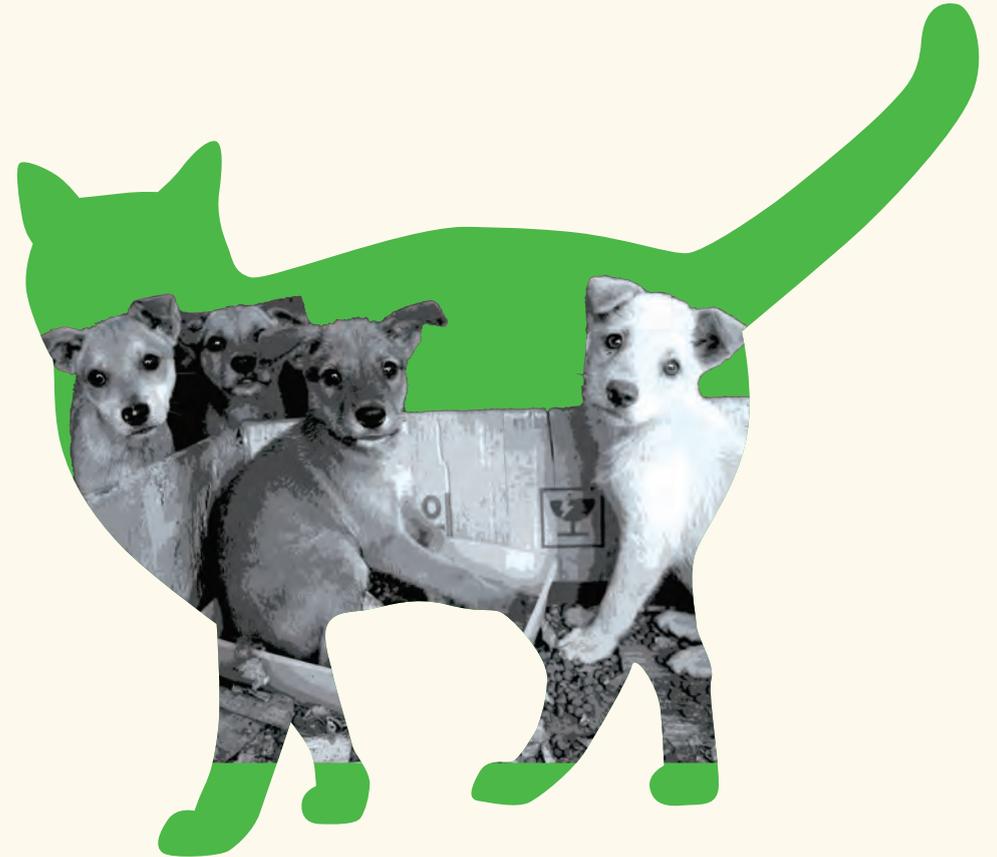
동물은 자신들의 권리나 복지를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 인간들의 책무이고 여러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그 최전선에서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상황이 개선되는 결과가 쌓이다 보면 어느덧 동물 복지의 지평은 확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 임순례(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독일의 경우 지금의 단계에 오는 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수백만의 동물,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년 후, 당신은 뒤돌아보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계속하시길!

- 산드라 길트너 (독일 뮌헨터어하임 소장)

## 201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사례집



201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사례집



## 201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사례집

펠넛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 주소 (03998)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22 전화 02-3482-0999 팩스 02-3482-8835  
 웹사이트 www.ekara.org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집필 전진경, 김혜란, 김현지, 박아름 함께 만든 이 김애라(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신윤숙(송파구 명예감시원), 양은경(서울시 명예감시원), 한병진(고유거 대표), 한혁(용산구 명예감시원)  
 참고자료: 201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자료집 등



사례집을 펴내며 \_ 4

<b>01_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 이해하기</b>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 도입 이유	7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법적 근거	11
3.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16
4.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역할	19
<b>02_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직무수행 준비</b>	
1. 우리사회의 동물복지 상황 이해하기	27
2. 동물보호명예감시위원에게 필요한 소양	34
<b>03_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사례</b>	
1. 감시원 활동 지원	55
2. 교육·홍보	56
3. 상담·갈등조정을 위한 개입	58
4. 우리동네 동물복지 감시	60
<b>04_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의 미래 그리기</b>	
참고자료 1. 한국의 동물보호법	64
참고자료 2.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모음	78

## 사례집을 펴내며

언제나처럼 2015년에도 동물과 관련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물실험 금지를 포함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의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우리사회의 끔찍한 동물학대 소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동물복지 개선에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애완동물로 부르거나 동물학대에 대해 무감각하던 십수 년 이전에 비하면 동물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1.8% 라고 합니다.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죠. 1인가구나 자녀가 없는 가정이 늘면서 반려동물의 증가세는 더욱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의 통계수치를 더 살펴보자면, 응답자가운데 TNR에 대해서 86% 이상, 보호소에서의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는 90%,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강화와 동물복지에 관한 규제 강화에는 90%이상이 찬성하였고 71.7%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은 동물보호 수준이 미약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분명히 달라졌지만, 현실은 그 변화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서글픈 사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고, 실재하는 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행정조직의 예산 및 인력부족, 동물보호법 위반 시 경찰의 미흡한 대처, 사법기관의 인간중심적 판결, 각박한 사회·경제적 분위기 등등은 동물복지에 매우 큰 걸림돌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있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역할이 매우 크지만,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업무상 co-work을 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들(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 업무가 전담인 경우가 많지 않고 2년마다 순환보직 되는 관계로 동물보호에 대해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니 그들과 소통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학대범이나 법률위반자를 직접 다루거나 경찰의 적절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대해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조차 관련법규를 모르는 경우 또한 허다하니깐요. 동물학대범이나 동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인내와 노력, 변화를 자극하는 대화술이나 심리분석 등도 매우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구조를 하는 경우,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행동양태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해당동물이나 구조자가 덜 위협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동물은 자신들의 권리나 복지를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 인간들의 책무이고 여러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그 최전선에 서있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분노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상황이 개선되는 결과가 쌓이다 보면 어느덧 동물복지의 지평은 확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우리 사회의 잉여나 착취대상이 아닌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진하시기를~!

(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

# 01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 이해하기



###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 도입 이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감시원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은 **공무원**이지만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시민**인데요, 행정과 민간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동물 보호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물보호감시원'의 도입 이유, 그리고 감시원과 명예감시원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1) 동물보호감시원 제도의 기원

민간에서 동물보호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기원은 동물보호 입법이 처음 도입된 19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최초의 법이라 할 수 있는 '동물학대방지법(An Act to Prevent the Cruel and Improper Treatment of Cattle, 1992년 영국)'이 그 기원입니다.

당시 중심적 역할을 한 마틴 경(Richard Martin)은 법을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이 동물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동물보호 의식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제안하였고 마침내 1824년,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the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가 생겨났습니다.<sup>1)</sup>

이 협회는 실제로 동물보호캠페인 뿐 아니라 동물학대 사건이 생기면 기소를 담당했고, 판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영향을 미쳐 동

1) 동물학대방지협회는, 1840년에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왕립(Royal)'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아 현재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로 불립니다.

물학대의 범위와 보호하는 동물종을 늘려나갔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동물 보호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동물보호방지협회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단체지만, 영국의 근대적 경찰제도가 확립<sup>2</sup>되기도 전에 활동을 시작하다보니 지금까지도 동물보호법 집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한국의 동물보호감시원 제도

한국 동물보호감시원 제도의 시작은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91년에 제정된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조문이 총 12개에 불과한 형식적인 법률이었지만, 2007년 제5차 개정을 통해 총 26개조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동물보호 기본법으로서 본격적인 기능을 시작했습니다.<sup>3</sup>

바로 이 2007년의 개정 과정에서 동물보호감시원(당시 '동물보호감시관') 제도를 비롯해 반려동물 등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유기동물 보호, 동물판매업 등록 등의 중요한 제도들을 새로이 도입하게 됩니다.

특히 동물보호법 제19조<sup>4</sup>는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에 대한 내용을 담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임명하고, 동물보호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보호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감독과 지도 활동을 담당합니다. 학대 신고를 접수 받은 동물보호감시관은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격리(3일)하고 치료 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동물보호 관련 교육·상담·홍보를 수



RSPCA감시원초기\_출처RSPCA

행하며, 동물학대 신고 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인 감시원의 업무와 동물 구조 및 보호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시작한 영국은 동물보호 시민단체인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자체 감시원이 동물학대를 조사하고, 기소까지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실제 수사는 경찰(행정부)이, 기소는 검찰(사법부)이, 관련 행정 업무는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이 담당합니다.<sup>5</sup> 그리고 여기에 더해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동물보호 교육·상담·홍보 활동을 담당하는 시민을 따로 위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입니다.

	영국	한국
동물학대 제보 접수	RSPCA	경찰, 동물보호감시원
고발		동물보호감시원, 시민
수사(현장조사, 증거수집)	RSPCA 감시원(Inspector)	경찰
구조동물 보호	RSPCA	지자체(유기/피학대 동물) <sup>6</sup>
기소	RSPCA + 사무변호사(solilcitor)	검찰
유무죄 판결	판사	판사
가능한 형사 처벌	51주 이하 징역, 2만파운드(약 3500만원) 이하 벌금, 동물몰수, 사회봉사, 반려동물사육 금지 등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자료: 2007년 제5차 개정 이유 (동물보호감시원 업무 도입 이유)

2) 1829년 로버트 필이 런던경찰청(수도경찰청)을 설립하고 여러 경찰 조직을 통합하고, 계급 제도 정복착용 등의 제도를 통일한 것이 영국의 근대적 경찰제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 제복이 RSPCA 동물보호감시원 제복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3)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07년 전부 개정(제5차)되었고, 그 뒤 2011년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제9차 개정에서 47개조로 확대·정비됩니다.

4)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제40조가 동물보호감시원, 제41조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차이는 영국과 한국의 근대적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간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며,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및 활동의 전문성을 따지자면, 한국이 아직 영국에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6) 동물보호법 제14조에서 지자체에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명하고 있지만, 그 보호기간이 충분치 않아,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법적 근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법적 근거는 아래 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 동물보호법 - 법률

-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 2008.1.27.] [법률 제8282호, 2007.1.26., 전부개정]

#### 【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伴侶)동물의 사육 및 유기(遺棄)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동물의 등록제 도입(법 제5조)
- 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법 제6조)
- 다.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법 제7조)
- 라.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마련(법 제8조)
- 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법 제14조)
- 바.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법 제19조)**
  - (1)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되,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4) 동물보호감시관제 등의 도입으로 **민간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사.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법 제25조 및 제26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③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상담 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제14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③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운송 및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신고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지원**

④ 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1호, 2014.3.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 044-201-235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 41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교육 이수 수료증은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 이내로 한다.

**제3조(명예감시원 활동)** ① 명예감시원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은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동물소유자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등에게 내보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예감시원은 업무수행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위촉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 해촉)**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 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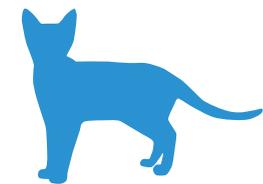
**제6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활동은 위촉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의 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검역본부장에게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훼손 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시장과 구청장, 도지사 및 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은 동물보호활동의 '경험'과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명예감시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별한 자격증보다는 동물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 공무원과 시민을 움직이는 협상력, 그리고 활동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 자격요건

우리 동물보호법은 수의학, 축산학 학위 또는 관련 자격증을 가졌거나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의 경우 위와 같은 동물 관련 자격증이나 직장 경력이 없더라도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교육과정을 거쳐 명예감시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2) 위촉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시·도·구·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검토 및 선정 후 기관장이 위촉하게 됩니다.<sup>1</sup> 정식으로 위촉되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증'이 발급됩니다.

#### ♣ 위촉 절차

- ① 시민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과정을 수료: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인터넷 교육 사이트(<http://edu2.kvma.or.kr/>) 에서 온라인 수강 및 수료
- ② 시민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신청서(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는 경우 추천서)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분기말 10일 이전에 제출. 이때 본인이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신청사유'에 제시 (추후 안내에 따라 교육 이수 수료증 제출)
- ③ 시·도·구·군청 혹은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④ 시·도·구·군청 혹은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증 발급
- ⑤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 활동 진행



1) 지자체별 최대 위촉 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명예감시원으로 신청하여 위촉하는 경우 전국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라면 동물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나 동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지역의 개별적 동물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학대, 예를 들어 개식용과 관련된 번식장 및 업소 문제, 또는 AI, 구제역 사태 시의 무자비한 농장동물 살처분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에 무력감과 회의감이 들고, 그러다 결국 명예감시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까지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요.

당장 우리동네의 개식용 문화를 다 없앨 수야 없지만, 개별적인 한 사건에 대해 증거 확보의 기회가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행정조치나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분히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해결사의 역할이 아니라 중재자, 갈등조정자로서의 어려운 책무를 받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느리고 긴 싸움의 한 부분에 참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을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동물보호감시원, 즉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공무원을 돕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직무를 시민으로서 지켜보고 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바뀌어도 그간의 활동 정보를 바탕으로 감시원에게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우리 지역의 든든한 동물복지 지킴이일 것입니다.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소명**

- ◎ 지속적 활동으로 법에 근거한 문제 해결 결과를 축적 → 새로운 공무원에게 정보 제공
- ◎ 법의 미비점에 의한 안타까운 사례 집적 → 지자체 혹은 동물보호단체에 개선안 제출
- ◎ 동물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동물보호제도 정착에 기여
- ◎ 구조적인 학대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기울이기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역할**

법에 제시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역할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역할 (동물보호법시행령 제9조 7항)**

활동 내용	활동 예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반려동물등록제 안내, TNR 등 길고양이 관리사업 안내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감시원에게 정보제공 등 협력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유기동물보호소 합동점검 등 현장 활동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구조 지원, 보호처 수소문

이 밖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혹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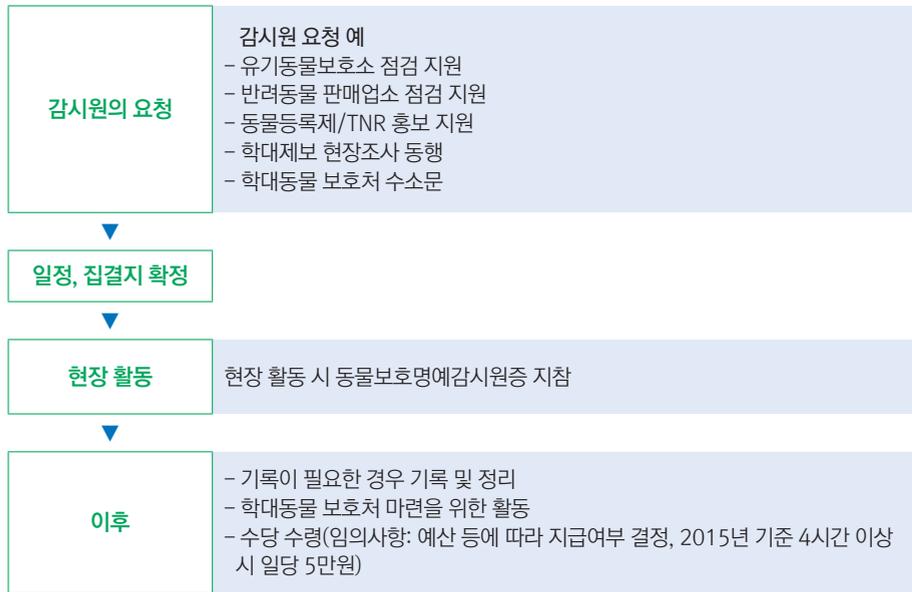
**■ 활동이 가능한 지역적 범위**

위촉처	활동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시·도·구·군	관할 구역



## ■ 활동 시 이상적인 업무 처리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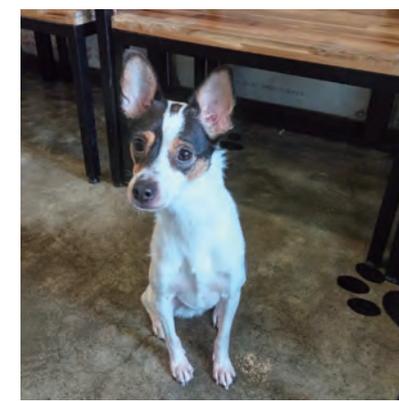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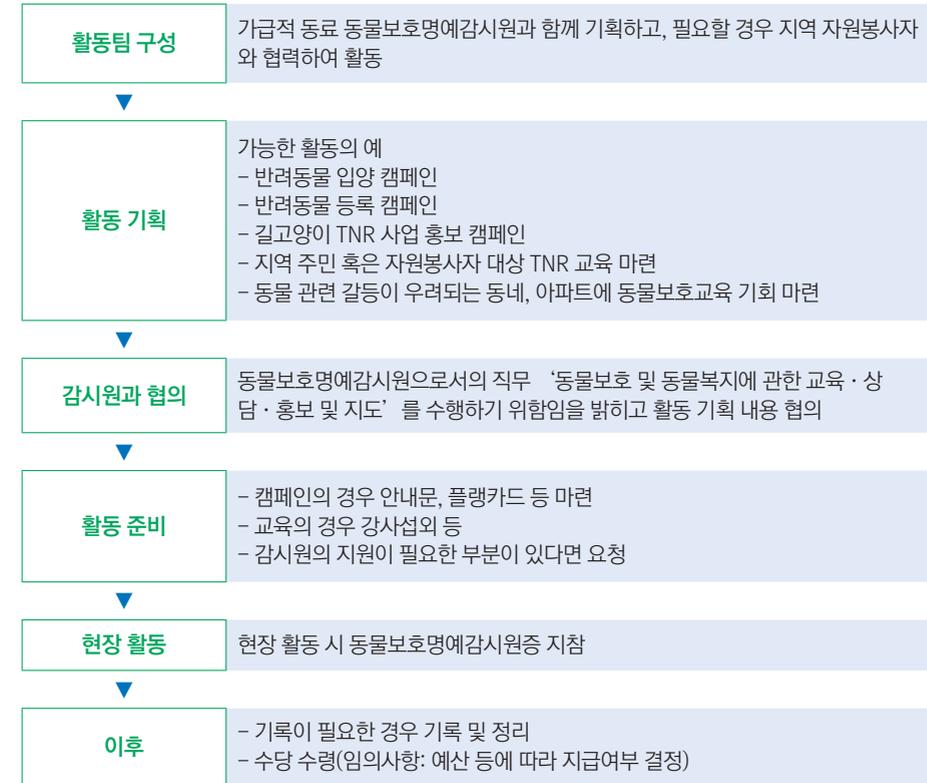
### ♣ 동물보호감시원의 요청이 있을 때



### ♣ 명예감시원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 ♣ 활동을 기획할 때



● 저희 구에서는 제가 명예감시원 활동을 주도하는데, 평소에는 주로 구청 TNR 사업에 동행하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TNR을 쉬는 기간에는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는 쪽으로 하는 편이에요.

때로는 다른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상담을 하거나 사건에 개입하게 되는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팁을 드리자면, 상담 단계에서 확언을 주거나, 너무 갈등을 키우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동물보호감시원이 협조문을 보낸다거나.. 구청이 함께 해결하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하는 게 좋아요.

● 사람들은 명감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또는 구)에서 위촉받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의 활동의 일환’으로 얘기를 건다는 점을 확실히 해줘야 해요. 명감증을 내리면 공신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해요. 대신 ‘동물빠’라는 반감을 상쇄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차분히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이때 내가 만일 반감을 산다면 이 사람이 치밀하게 알아보고,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민원을 넣어 곤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감증을 공무원증으로 오해하는 것 같으면 일부터 “저는 공무원은 아닙니다”라고 반드시 수정을 해줘요.

● 명감 활동은 결국 ‘정책’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권력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제도를 이용하는 밀당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명감증을 쓰고, 언제는 그냥 시민으로서 응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랄까, 전략같은 게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구에서 개시용반대 피켓팅을 하면서 명감증을 내세우면서 해서 지자체쪽에 큰 민원이 들어오고 해결이 더 어려워진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명감증 빼고 일반 시민으로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 활동 시 유의점

- 직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명예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동물소유자, 시설책임자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감시원과 동행하기 어려울** 때는 공무원인 감시원에게 미리 공문이나 유선으로 방문 예정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충분한 협의 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동물보호감시원과 명예감시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다.)
- 직무 수행 시 부정행위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③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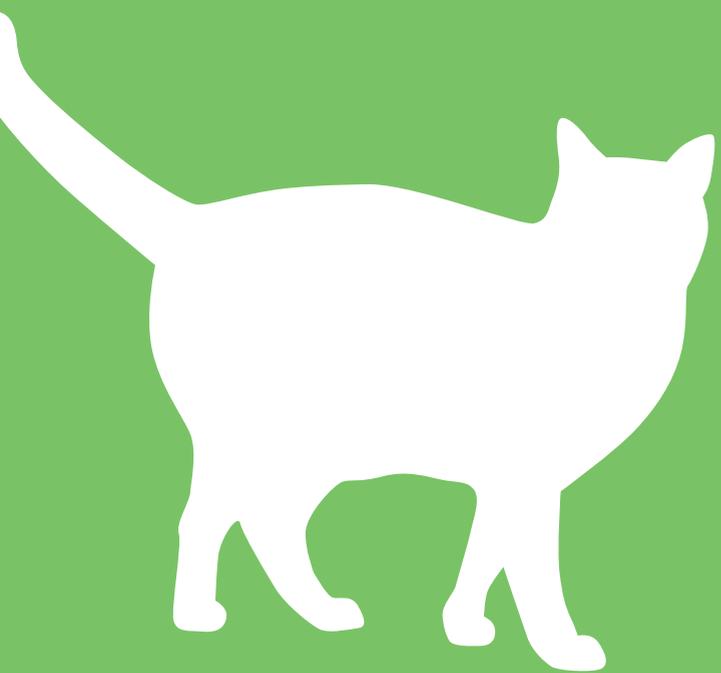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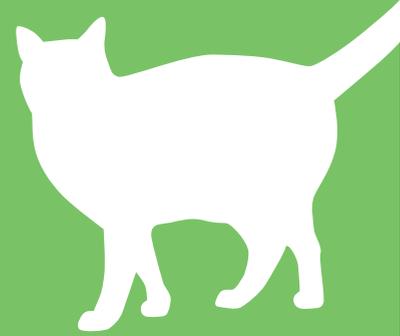
④ 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 법에 제시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역할

02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직무수행 준비



## 1. 우리사회의 동물복지 상황 이해하기

### 1)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 ■ 동물에 대한 생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 자란 어떤 이는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 불에 까맣게 그슬린 개를 대로변에서 칼질 하는 아저씨를 동네 아이들이 빙 둘러서 구경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골장터에서 개나 고양이를 팔면 불법이지요.

70년대 집안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니 고양이 자체를 키우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반려동물로 고양이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에서 외출냥이로 키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하지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된 흐름이 농장동물,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의 복지가 언급되는 오늘날입니다. 영국 여왕이 모피를 입고 나왔다가, 항의하는 시민들 때문에 코트를 갈아입었다는 소식에서 모피의 잔인성을 알 수 있고, 이런 외국의 놀라운 사건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대라 빠른 변화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카라와 같은 동물보호단체에 만명이 넘는 분들이 아낌없이 물질 정신적 지지와 지원을 주고 있는 사실도 오늘날 동물의 향상된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 공존합니다

“와~ 새가 노래하네^^”  
 “에이~ 저 놈의 도둑고양이, 우는 게 꼭 애기소리 같아서 썩뜩해...”  
 아기 우는 소리가 ‘썩뜩하다’뇨? 새나 고양이나 다 동물의 본능에 따른 소리인데 사람의 인식 차이로 느낌은 극과 극입니다.

동물에 대해 우리의 인식이 변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보다 늘 있던 사실을 ‘생명공감’적으로 재해석 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아기 우는 소리와 비슷해서 ‘더욱 친근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이 아내가 도맡아하는 집안일에서 가사노동으로 재해석되어 가족 누구나가 해야 하는 일로 자리매김 되는 게 인식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책임의식은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 같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 2015년도 현재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21.8%로 개만 키우는 가구가 16.6%, 고양이만 있는 가구는 2.7%, 개와 고양이 및 타 반려동물을 모두 키우는 가구는 2.5%로 나타났습니다.<sup>1)</sup> 서구와 마찬가지로 반려견 가구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반려묘 가구의 경우 무려 3년 사이에 63.7% 증가하여 고양이와 함께 하는 가족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도도하고, 자립적인 고양이의 매력을 경험할 사람이 많아질 터이니 고양이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검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인식의 변화가 책임의식의 고양이를 항상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 유기 숫자가 동반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이 아니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생명을 평생가족으로 맞이한다는 책임의식이 더욱 깊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기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한편, 고무적인 변화는 86.3%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이 길고양이에게 중성화수술을 한 후 방사하고 먹이를 주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길고양이를 무조건 잡아가는 것보다 TNR이 인도적 조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동물등록제에 대해서는 55.8%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기동물 안락사를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고, 유기견이 개농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실인데도 내 반려동물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

1) 2015년 12월 17.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의무에 따라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현황 등 실태추정을 위해 일반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는 책임의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반려동물도 금수저, 흙수저가 있다는 선부른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버젓이 개를 먹는 나라고, 품종 여부를 떠나 잃어버린 내 개가 개농장으로 끌려갔을 확률이 높은 현실에서 동물보호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동물복지의 갈림길은 개식용에 대한 태도와 인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도 없어서 특별히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실태조사 조차 저항이 있는 현실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개는 식용이 아니라 친구라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영원한 친구, 변치 않는 우정, 사람을 살린 개 등 개와 인간이 특별한 유대를 이어왔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식용을 문화로, 개인 기호로 치부해버리는 인식이 질기게 버티고 있는 현실인 만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집중적 활동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현행법만으로도 단속할 부분이 많습니다. 개식용을 둘러싼 인식의 변화에 명예감시원 여러분의 선도적인 활동과 경험이 동물권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의 현실적 제약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동물보호법의 수준이 곧 명예감시원 활동 역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명예감시원은 공무원으로서 동물보호직무 수행을 가진 공무원의 직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명예감시원 단독으로는 공적, 물리적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편 명예감시원 직무는 동물과 동물보호법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순간 판단력 같은 등조정 능력과 실행력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명예감시원은 **현장 파악, 해결방안 도출, 감시원 또는 경찰과 협력**하여 동물보호 활동 시행을 위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교육과 정보가 태부족하여 현실적으로 활동의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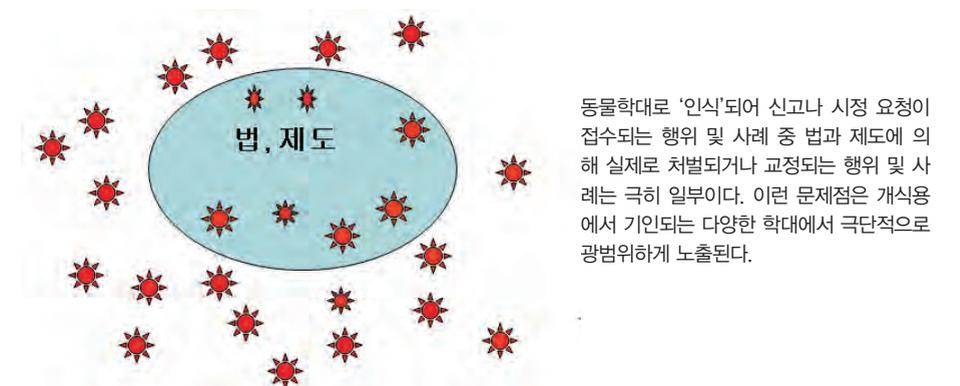
국민인식	법적 제도적 한계
태만과 방치, 정서적 학대를 명백한 학대로 인식	▶ 법적 처벌 전혀 불가능
학대자로부터 소유권 박탈과 징역형 적극지지	▶ 학대자나 방치자로부터의 소유권 박탈과 동물 사육 금지 조치 불가능
학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 취할 것	▶ 동물보호감시원, 경찰관서 등의 동물보호의지와 협조 부족



## ■ 법적 제도적 동물보호 장치의 미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직접적 물리적 학대외에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학대의 경우에도 **상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학대나 극단적 방치 상태의 동물을 구조했다고 해도 **치료하거나 보호할 장치와 예산이 없습니다**. 태만에 의한 극단적 방치나 대규모 식용개 사육 등 법 테두리 밖에서 동물학대행위가 빈발하지만 대응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동물보호 요구 수준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법적 제도적 동물보호 실행수준과 도덕, 윤리, 규범이 요구하는 수준과 막대한 갭이 형성됩니다. 동물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명예감시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직무 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현황	개선 방안(예)
<p>◆ 동물보호감시원과의 업무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감시원의 소극적인 자세</li> <li>-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전문성 부족</li> <li>- 많은 업무로 우선순위 밀림</li> <li>-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에 부정적 소극적인 입장</li> </ul> <p>◆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업무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법에 대한 낮은 인식</li> <li>-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 부족</li> <li>-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의 팽배</li> </ul>	<p>→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감시원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p> <p>→ 동물보호감시원과 연계하여 동물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 마련</p> <p>예) 순찰차량이 도로 순찰 시 위급한 유기 동물 등의 구조와 이송 업무를 돕는 등 효율적인 업무 협조 시스템 마련 필요</p>

## ■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수행을 위한 인프라 부족

그럼에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동물보호법이 명한 활동의 범위내에서 동물보호체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로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에 신고와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물 소유자 동물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고 무등록 불법번식장과 판매업소들이 넘쳐나고 법이 있음에도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신고나 등록을 한 업소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입니다. 불법번식장이나 판매업소를 적발하고 폐쇄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번식장 폐쇄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 불법 업소들이 자연소멸되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명예감시원의 활동도 소유자 등록 홍보나 판매업소 시설 기준 점검 등 국가나 지자체가 수행하는 소극적 동물보호 활동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와 교육의 제공 부족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효과적 활동으로 동물보호 수준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역량도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미비한 행정력을 지원하고 법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갭을 드러내 동물보호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균일한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명예감시원 활동의 표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명예감시원과 감시원, 또한 명예감시원들이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이나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 교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예감시원 개개의 능력과 의지에 기대어 활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필요한 소양

“정보와 지식을 갖춘 감시원은 성공적인 조사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하여 **적절한 예절, 자제력, 태도**는 전문 기관의 필수적 요소이다.”

- 호주 RSPCA 감시원 '기본 업무 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中

앞의 '우리사회의 동물복지 상황 이해하기'에서 충분히 살펴본 것처럼, 우리사회는 동물복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매우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길게 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재 가능한 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갈등조정자로서의 자세, 법/제도 활용 능력, 그리고 동물에 대한 지식과 실천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 갈등조정자로서의 자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물에 관심을 가진 주변의 시민,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주인, 길고양이를 위협하고 그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에게 화를 내는 사람, 공무원과 경찰 등을 마주칠 때 그 누구도 완벽히 준비되어 있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동물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신중하게 소통할 것이고, 그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자다'는 인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길고양이를 도와도, 그것이 옆의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산다면 그 결과로 내가 아닌 동물이 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명예감시원은 '사람을 설득하고,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동물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여 너무 저자세일 필요도 없고, 불필요하게 많은 이들을 적으로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동물학대는 대부분 동물 주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갈등의 요점과 해결방법을 빨리 판단하여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 동명감 오리엔테이션에 매년 참석하는데, 단 세 명이 위촉돼 있어도 각자의 양상이 다르더라고요. 각자 동명감에 임하는 발로가 다르달까. 처음에는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보면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그래도 방향은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 사이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과의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것도 각자의 숙제로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감시원들끼리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먼저 구축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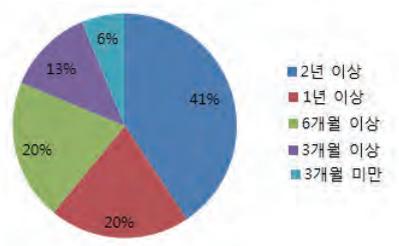


①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 등)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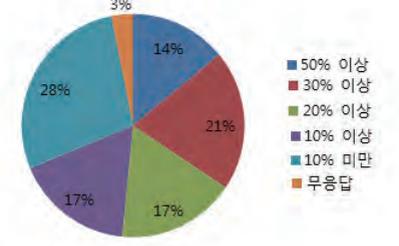
현재 동물보호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로 임명됩니다. 동물보호감시원도 2년 이내의 짧은 임기를 거쳐 다른 곳으로 가고, 이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는 새로운 감시원이 새로 오는 일들이 잦습니다.

2015년 10월, 카라가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0%는 업무를 맡은 지 1년 미만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업무 중 동물보호 업무가 절반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14%, 10%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은 28%나 되어, 이들이 동물보호 업무를 전문성 있게 전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보호감시원 업무 수행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귀하의 업무 중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다보니 공무원은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고, 시민들은 동물보호 행정을 지지부진하게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시민으로서 공무원을 도와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합동단속을 나갔는데, 약간 명감인 내가 약간 일을 만들려고 할까봐 걱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명감들은 동물들을 위해 잘 하고 싶어서 그런데, 막상 공무원들과 서로 신뢰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공무원들이 명감을 무슨 공권력 안으로 들어와 입지를 넓히는 압력집단 보듯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명감도 명감이지만, 공무원들도 우리랑 대화의 기회, 모임을 갖고 서로 신뢰를 갖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때문에 감시원과 명예감시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동물보호 업무 발생 시 기존 자료 공부와 함께 경력이 있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자신의 경험을 공무원과 나누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과 일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의 하나는 '법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법의 한계는 곧 공무원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을 민간에서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조직되고 경험을 쌓은 '우리동네 봉사자'들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 이상적인 업무 분담도

처리 순서	시민	공무원		
	명예감시원	감시원	경찰	
사건 인지	- 직접 목격 - 주변 시민의 제보	- 시민의 제보 - 명예감시원의 제보	- 시민의 신고 - 동물보호감시원의 제보	
사실관계 검토	- 사실관계 확인 - 동물보호법 검토 자문 - 현장조사 동행 지원 - 증거 검토	- 사실관계 확인 - 동물보호법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 증거 검토	- 사실관계 확인 - 동물보호법 검토 - 현장조사 동행 - 증거 검토	
대응	고발하는 경우	- 증거수집 지원(명예감시원 증 지참) - 학대동물 보호처 필요 시 보호처 마련 협조	- 고발	- 수사
	고발이 어려운 경우	- 학대동물 복지 증진 방안 마련 - 관계자 설득 지원	- 학대동물 복지 증진 방안 마련 - 관계자 설득	
이후	- 학대동물 복지 확인 - 기록 및 정리 - 수당 수령(임의사항 : 예산 등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 학대동물 복지 확인 - 기록 및 정리 - 수당 지급(임의사항 : 예산 등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 명예감시원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공무원의 태도

공무원의 태도	상황 예시	명예감시원의 대응 전략
동물보호법에 대해 잘 몰라 소극적임	- 증거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등 명백한 동물학대 건에 소극적 반응 - 제보자나 명예감시원에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님	- 동물보호법 안내 - 감시원의 의무 안내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 부족하여 소극적임	- 사안을 가볍게 치부하거나 문제제기를 귀찮게 여기는 등 동물보호 의지를 보이지 않음	- 동물보호법 안내 - 감시원의 의무 안내 -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직무태만 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법의 한계로 신고해도 소용 없다는 인식으로 소극적임	“어차피 동물을 보호조치 해도 3일 있다가 학대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해요”	- 고발이 아니라도 감시원의 도움으로 동물을 돕고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 제안에) (지속적 학대가 의심되고, 보호처가 마련된 경우) 명예감시원이 학대자의 소유권포기를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명예감시원 위촉에 부정적인 소극적 입장		- 명예감시원이 공무원에게 도움과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력
많은 업무로 우선순위 밀림		- 명예감시원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맡아 일의 처리를 도움 - 기다려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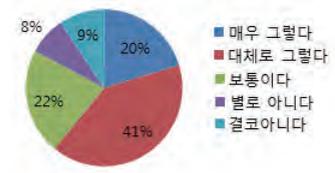
■ 공무원이 어려움을 느끼는 민원

- 1.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할 때**
  - ▷ 반려묘나 연령이 너무 어린 길고양이의 TNR을 요구할 때
  - ▷ 동물분양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 ▷ 키우던 개를 못 키우겠다며 보호센터로 버리려 하거나, 데려가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을 때
- 2. 개입하고 싶어도 자원이 없을 때**
  - ▷ 요구는 많은데 본인은 전혀 나서지 않을 때
  - ▷ 등산로에 출몰하는 들개를 잡아가 달라고 할 때
  - ▷ 공원이나 집 앞에 개가 와서 자꾸 변을 누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잡아달라고 할 때
  - ▷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프라)이 없을 때
- 3.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 ▷ 다수 민원인들 입장이 서로 상충될 때
  - ▷ 주민 간 감정싸움이 크게 번질 때
  - ▷ 애니멀호더 설득이 어려울 때
  - ▷ 첫 전화부터 제대로 안 하면 문제제기한다고 협박할 때
- 4. 혐오 민원에 시달릴 때**
  - ▷ 길고양이 혐오 민원
  - ▷ 이웃집 개 소음 없게 해달라고 할 때
  - ▷ 동물보호지식 무지로 인한 무차별적 전화, 욕설
- 5. 기타**
  - ▷ 무분별한 유기동물 신고, 일정기간 후 안락사된다는 것을 모르는 신고가 마음아픔.
  - ▷ 인력, 예산의 한계가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돌리며 비난받을 때. 마음 같아서는 왜 더 잘하고 싶지 않겠는가...
  - ▷ 유기동물보호소 시설개선 요구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선되는 과정을 지켜봐 주었으면, 개선요구가 있는 후 곧바로 되지 않으면 행정을 비판하는 게 힘들. 시설 등 개선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예산신청-심의-확정-사업추진
  - ▷ 심야 및 휴일에도 유기동물 신고, 병든 동물 유기 문제가 발생할 때
  - ▷ 해결 방법을 나도 모르겠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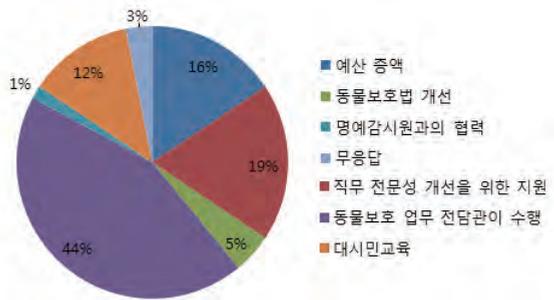
긍정적인 것은, 지난 2015년 10월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1%가 '동물보호 업무 전담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전담관 제도가 생긴다면 무조건적인 순환보직이 아니라,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노하우를 쌓으면서 오래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지요?

공무원들은 또 동물보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전담관 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예산 증액, 시민 교육** 등을 꼽았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동물보호 업무 전담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동물보호 업무 수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음 중 동물보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있어 공무원이란, 법에 제시된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감시해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그 법의 한계를 같이 떠안고 동물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동지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공무원과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동물사건 당사자(학대자 등)와의 만남**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만날 수 있는 동물사건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 동물학대 가해자 (예 : 노상에서 동물을 학대하여 사람들에게 목격된 이, 길고양이 급식터에 취약을 타 동물을 살해한 이 등)
- 무책임한 반려인 (예 : 출거나 더운 날씨에 동물을 마당에 두고 돌보지 않아 굶주리게 한 이)
- 혐오민원 제기자 (예 : 인근에 머무는 길고양이를 데려가라는 가게 주인)
- 입장이 다른 양 당사자 (예: 길고양이 밥자리로 다투게 된 캣맘과 인근 주민)
- 기타 동물 관련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예 : 거리에서 토끼나 고양이를 파는 이)

이러한 당사자들을 만날 때 어려운 점은 대화가 감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학대한 당사자에게 화가 나서 이쪽에서 표가 날 수도 있고, 상대의 적반하장 식 태도를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른 두 시민의 싸움이 되어 버리면, 정작 동물을 효율적으로 도와 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냥 데려와서 보호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학대자라 해도 현행법상 그 소유권을 막무가내로 빼앗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물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거리판매 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TNR 등)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상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급적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과 협력하여 보다 공신력 있는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감증이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를 얻는 데는 유리해요. 단, 명감증은 대화를 열 때 신뢰를 더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 결국 권한이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민 대 시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 그 사람이 길고양이를 없애달라는 민원을 넣은 사람일지라도, 저는 말을 걸 때 “도와주러 왔다”고 표현해요. 동물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우리 구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라 상황을 들어보고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하면 얘기도 술술 되고, 설득하기도 좋더라고요.

### ③ 여타 시민과의 만남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및 기대는 대체로 높고, 법과 제도는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시민들 사이의 동물에 대한 의식 편차도 매우 큰 편입니다. 개식용 문화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반려동물에 대한 방치와 정서적 학대를 ‘동물학대’로 볼 것이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해 각자 다른 생각이 공존합니다.

2015년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참고해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 ◎ 20~64세 인구 중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비율은 21.8%
- ◎ 반려인구 중 1/4은 이미 동물등록을 했고, 향후 등록 의향을 표명한 사람은 55.8%
- ◎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기동물 입양에 93.2% 찬성 (2012년 80.6%)
-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방사 정책 찬성 86.3% (2012년 70.9%)
- ◎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찬성 92.9%
- ◎ 동물보호 정책의 필요성 찬성 94.5%
- ◎ 선진국 대비 국내 동물보호 수준이 낮다는 의견 71.7% (2012년 67.7%)
- ◎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1순위 동물학대 처벌 강화, 2순위 동물보호교육, 3순위 유기동물보호소 개선
-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 의향 66.6% (2012년 36.4%)

여기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아직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 동물등록 의사가 없다.**  
: ‘유기 방지’라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목적을 생각할 때 등록의 필요성이 더 홍보되어야 함. 특히 가장 효과적인 ‘내장형 마이크로칩’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함.
- **길고양이 TNR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2012년 조사 당시 70.9%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반대의 이유도 주목할 만 한 것이, ‘강제 중성화 수술이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4.5%였음.**  
: TNR 사업이 길고양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시민들이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함. 2012년에는 1순위, 2015년에는 2순위 과제로 꼽힘.**

: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생명존중 교육, 아파트나 동네 주민 대상 동물보호정책 강연, 자원봉사자 대상 올바른 TNR 절차 교육 등 다양한 동물보호교육을 시행해볼 수 있음.

지금 우리 시민들은 동물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킬 것을, 그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조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업무를 통해 이러한 의식이 더욱 널리 공유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 법/제도 활용 능력

법을 활용하려 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이 모든 것을 해결 해주지 않는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보기에든 잘못된 행동이라 해도 범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법적 절차는 상대를 ‘무죄’판결 받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이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범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범 죄자를 기소할 수 있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영상, 사진, 녹음, 증인의 증언 등)

또한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은 학대가 의심되는 곳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고, 다만 3일간 만이라도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지만,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는 이러한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현장 조사의 경우 가급적 동물보호감시원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해자 특정, CCTV와 같은 증거 수집 등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내용	최대 벌칙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 ♣ 형사사건 처리 순서

<p><b>신고/고소/고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고소/고발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신고</b> : 112 등 법령에 따른 권한이 있는 기관에 사건을 알리는 것</li> <li><b>고소</b> : 고소권자(당사자 격)<sup>1)</sup>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li> <li><b>고발</b> : 고소권자,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조치를 구하는 의사표시</li> </ul> </li> <li>- 공소시효: 5년</li> <li><b>형사소송법 제249조</b>(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li> <li>- 5. 장기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li> </ul>
------------------------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경찰 수사 (대부분 우선 경찰에서 수사 진행)
- 범죄사실 입건, 증거 확보와 피의자 심문, 참고인 조사, 임의제출물압수, 실제 상황 조사, 사실 조사 등
- 경찰 수사 결과 유죄 가능성이 충분하고 사인이 중하여 검사의 보충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에 송치

**검찰 수사 & 기소/불기소**

-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3개월 내)
- 기소·기소(공판 청구) :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
- **약식기소** :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 이후 재판 없으나 벌금형 가능.
- 불기소
  - 다음의 사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이후 재판 없음.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의 상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 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 죄가 안됨**(범죄 불성립) : 피의사실이 있으나 사유가 있어 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 (예: 정당행위, 정당방위)
  -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각하** :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각하
  - 기소중지** :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추후 수사 재개 가능)

**활동 준비**

- 공판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유죄 혹은 무죄 판결
- 유죄** : 징역,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무죄: 공소기각 등
-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하면 선고일로부터 1주일 내로 즉시 항소 (형사소송은 1주, 민사소송은 2주 내에 항소장 제출)
- 2심 재판결과에도 불복하면 선고일로부터 1주일 내로 상고
- 대한민국은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대법원 판결로 끝임.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확정하거나,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령함.
- 재판 과정은 길게는 몇 개월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간다면 몇 년에 달하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재판 및 판결**

- 검사가 약식기소한 경우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림.

1)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경우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범죄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가 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친족 또는 자손

법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현행법의 한계점, 주의점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실수였다고 변명하면 미필적 고의(결과를 예견하면서도 그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행동)가 인정되기 쉽지 않아 학대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있음.**

- 법적 절차 이전 단계에서 증거(동영상, 사진, 범행의사를 인정하는 녹음자료, 학대에 사용된 도구, 동물의 사체 등)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좋음.

: 향후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상해의 경우 증거가 필요함.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동물이 고의로 살해했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이다. 상해 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을 통해 잘못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물학대가 발생하면 꼭 동물병원에 데려가 검진을 받도록 하자.**

- 피가 나거나 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반드시 사진 찍어두기

- 골절, 금이 가는 등의 외상이 없는지 반드시 X-ray 찍기

-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가급적 맞은 곳의 털을 민 후 타박상 등의 검진 요청하기, 발견 시 사진 찍어두기

: 향후 상해 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폭력행위와 방임 등의 환경적 학대도 동물학대로 규정할 필요 있음.

● **학대의 범위가 너무 좁음. 동물에 대한 폭력, 심각한 동물학대로 발전할 수 있는 애니멀호딩(본인이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만큼 많은 동물을 수집하는 동물학대 행위)**

: 추후 법 개정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

※ 참고 : 2010년 수의과학검역원이 진행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 시민들이 다음의 행위도 동물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함.

- 질병, 사고시 치료하지 않는 행위 (83%)

- 상습적으로 굶거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81%)

- 불안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78%)

-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77%)

● **'개가 축산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조(가축의 종류)에 들어가 있어 개농장 개를 '반려동물'로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는 '가축의 종류'에 들어가 있을 뿐,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시행령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농장이라 하더라도 도살(잔인한 도살, 동종의 동물 앞에서의 도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도살) 등 동물보호법 제8조에 명시된 동물학대의 증거가 있다면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의해 고발 가능(식용 목적의 도살이라고 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문제제기 가능)

: 추후 농림축산식품부령인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가축'에서 '개'를 빼거나 반려동물 식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동물보호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3) 동물에 대한 지식과 실천력

동물에 대한 지식과 실천력 또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필요한 소양입니다. 그 내용과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 ♣ 동물에 대한 지식의 예

- '동물복지'의 개념 이해
- 개, 고양이와 같은 대표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 우리사회의 법/제도의 수준에 대한 이해
- 동물 구조 혹은 길고양이 TNR 시 주의사항
- 우리사회의 동물보호운동의 이슈에 대한 대략적 지식
- '동물권', 생명존중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통찰

#### ♣ 동물 관련 실천력의 예

- 동물 구조 경험과 노하우
- 동물 구조 시 보호처를 마련하거나 수소문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 길고양이 TNR 경험과 노하우
- 동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조직력

동물복지란 동물이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공포 없이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연상태에서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는 법적, 과학적, 윤리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파악 방법은 '동물의 5대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 ♣ 동물의 5대 자유 -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길고양이 복지 측정의 예

고려할 사항	길고양이1	길고양이2
본래의 정상행동	정상적임	잘 먹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음
배고픔/목마름	근처에 물, 사료를 급여해 온 케어테이커 존재	잘 먹지 못해 약간 마른 편
불편함	별도 외부 요인은 없음	별도 외부 요인은 없음
고통/상해/질병	건강한 편	구내염으로 추정되고, 원가 먹을 때 고통스러워함
공포/스트레스	사람을 경계하는 편이지만 은신하는 곳이 있어 스트레스가 치명적인 수준 아님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종합적 판단	5개월 전 TNRI 완료된 고양이로 현재 케어테이커의 급식 외의 별도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음.	구내염 치료와 완화 조치가 필요함. 재발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 있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심한 편임. → 치료 경과를 보면서 임시보호처 마련 시도할 것.

동물에 대한 지식과 실천력은 점수를 매기듯 수준을 가늠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실천력을 검증하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지식이 다른 많은 사람의 것과 맞는지, 또 내가 해 온 실천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으므로, 동물보호단체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정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물을 돌보는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실천력을 가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경청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참고사례·RSPCA 감시원에게 요구되는 것들

아래는 영국과 호주의 RSPCA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요구되는 소양이라고 합니다. 한국과는 제도가 달라,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체 직원이지만 동물보호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참고하며 살펴봅시다.

■ 영국 RSPCA의 <동물보호감시원 훈련에 지원하기 위한 요건>

♣ 지원 필수 요건

1. 영어, 수학 포함 5개의 GCSE's에서 C 이상을 받아야 함. (GCSE, Th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A+에서 G등급까지 주어지는 영국의 수능 격)
2. 영국과 웨일스 내 어디로든 이주할 수 있어야 함.
3. 유효한 영국 수동차량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4. 옷을 입은 채 50미터를 2.5분 이내 수영할 수 있어야 함.
5.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6. 동물을 다룬 경험이 있어야 함.
7. 뛰어난 행정, 사무 능력이 있어야 함.
8. 저녁, 주말, 휴일 근무에 대비해야 함.

♣ 추가적으로 고려할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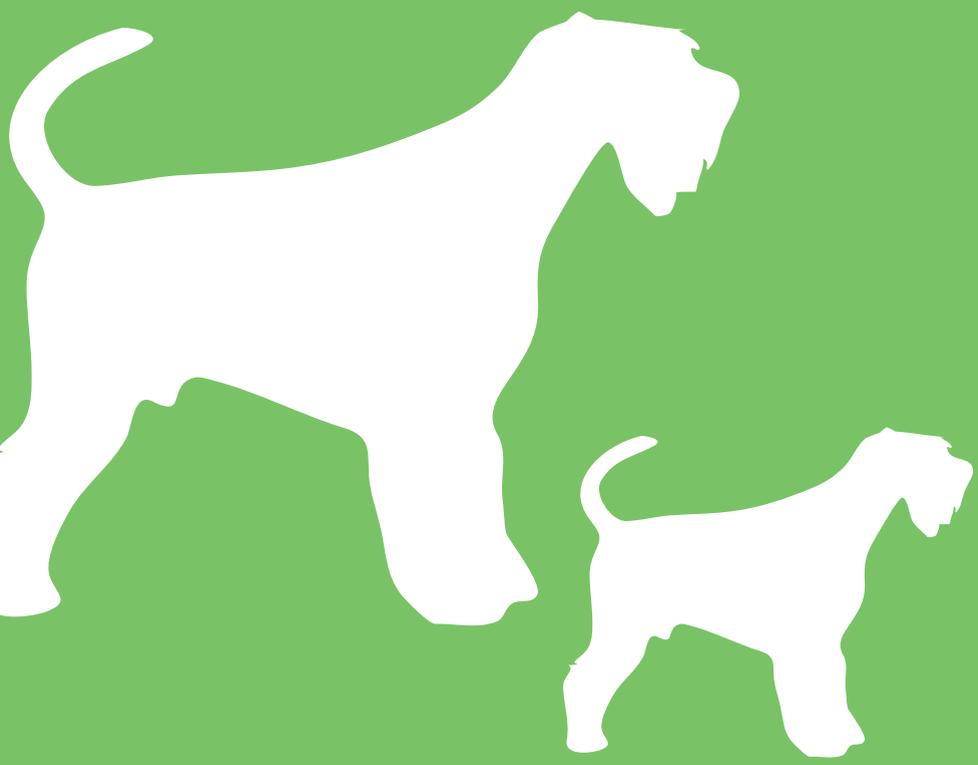
- 30~40kg의 개나 70kg의 양을 옮기는 등 고도의 육체적 업무가 가능해야 함.
- 구조 시 자신과 다른 생명의 목숨을 안전히 하기 위한 고도의 수영 능력이 필요하며, 요건에 못 미칠 시 해고됨.
- 폭력, 위반, 횡령 등의 범죄기록 및 개인정보를 기관에 공개하게 됨.
- 상급자 조언 없이 동물복지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결정력, 결단력이 요구됨.
- 동물을 구조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질병, 부상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1차에 통과하면 심리감정을 받게 되며, 이 단계를 통과하면 건강검진과 신체능력 검사가 이루어짐.

■ 호주 RSPCA 감시원 ‘기본 업무 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중

- 감시원은 언제나 예의와 사리분별력을 보여야 하며, 법에 의거한 위력을 행사할 때는 최대한 신중해야 함을 기억하라. 공격적인 태도가 아닌 신중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감시원은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공개 행동을 하기 전에, 가능한 한 상대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을 가려하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예의를 지킬 뿐 아니라 단호함을 유지해야 한다.

0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사례



2015년 서울시 및 관할 구 소속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상황과 공식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15년 12월 18일)

위촉 기관	인원	활동 건수	활동 내용	
시 소속 (총 25명)	서울시	25명	110 건	<p>아파트, 공원, 동물관련업소, 지하철역사 등에서 동물등록제 및 길고양이중성화(TNR)사업 전단지 및 홍보물(물티슈, 부채, 배변봉투 등) 배부를 통한 대시민 홍보활동(91회, 274명 활동)</p> <p>▶활동기간: 2015.4.10.~12.10(8개월)</p> <p>▶전단지 13,073장, 홍보물 3,865개, 포스터 12장</p> <p>▶2015.7.23.: 농림부·서울시·동물보호단체 등 동물등록제 민관합동 홍보캠페인(신도림역사내, 전단지 및 홍보물 배부)</p> <p>홍보활동 시 외출견 동물등록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모니터링 병행 실시</p> <p>- 조사대상: 1,524마리</p> <p>- 등록률: 61.2%(932마리)</p> <p>▶내장형: 46.2%(431마리)</p> <p>▶외장형: 43.7%(407마리)</p> <p>▶인식표: 10.1%(94마리)</p> <p>- 인식표 부착률: 35.2%(537마리)</p> <p>- 목줄 착용률: 88.6%(1,350마리)</p> <p>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과 동물판매업소, 동물보호센터, 동물소(전시관), 역사 내 동물판매, 개 도축업소 등 합동 지도·점검 활동(19회, 38명 활동)</p> <p>▶점검업소 51개소, 위반업소 7개소(동물판매업소)</p> <p>▶상반기: 2015.6.11.~8.12(45일간)</p> <p>하반기: 2015.10.1.~11.6(25일간)</p>
구 소속 (총 28명)	강동구	2명	6건	<p>2015.1.8 / 1.9 길고양이급식소 관리</p> <p>2015.1.12. 동물미등록가구 점검 및 외출시 안전조치 계도</p> <p>2015.6.22 / 6.25 / 7.8 동물판매업소 점검</p>
	강서구	1명	0건	2014년부터 명예감시원 활동 없었음
	관악구	3명	1건	2015.10.15. 유기동물보호센터 점검
	구로구	4명	2건	2015.5.3. / 10.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홍보
	노원구	4명	0건	2014년부터 명예감시원 활동 없었음
	서대문구	1명	2건	2회 판매업소 점검
	송파구	3명	4건	<p>2015.8.11. / 12.8 유기동물보호소 점검</p> <p>2015.7.8. / 12.14 길고양이 TNR 병원 점검</p>
	용산구	4명	4건	<p>2015.6.25.~26 / 10.28~30 동물 관련 업소 점검</p> <p>2015.5.1. / 5.16 동물등록제 홍보</p>
	은평구	4명	0건	올해 명예감시원 활동 없었음
	종로구	2명	0건	올해 명예감시원 활동 없었음

# 1. 감시원 활동 지원

서울시내 24개 구 중 10개 구에 각 평균 2.8명의 명예감시원이 있는데요, 10개 구 중 4개 구에서는 2015년에 공식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산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을 중심으로 지역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이 모여 활동 내용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국내 제1도시라는 서울의 활동조차 이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니, 아직은 우리사회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이 저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올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활동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활동 뿐 아니라, 인터뷰 조사를 통해 파악한 명예감시원들의 비공식적 활동들도 모아보았습니다.



● 일년에 두 차례 각 구청과 계약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 감시업무에 동물보호명에 감시원과 동물단체와 동행하여 위반사항이 없는지, 제대로 유기동물이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을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구청의 동물보호담당자들이 놓치고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지적하여 유기동물보호소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개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부산

● 부산시 각 구청의 유기동물보호소 선정을 위한 지정위원회를 만든다고 참여요청이 와서 지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신청을 한 보호소를 다녀오고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동물복지를 가장 잘 실천하고 각 지역에 맞는 보호소를 선정하도록 나름의 점수를 매겨서 제출했고, 선정된 보호소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부산

● 한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를 구조하여 6~7마리 키우는 사람이 일정 시간대에 고양이들을 외출을 시켰나봐요. 그런데 집에서 돌봄받는 애네들이 사납게 다른 길고양이 물고 내쫓고 밥도 뺏어먹고 해서 주변 캣맘들의 민원이 발생했더라고요. 동물보호감시원이 함께 나가자 하시기에 같이 가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감시원과 함께 “조금 멀리까지 나가 유기동물이 돼서 보호소로 가면 어떡하냐”고 주인을 설득했어요. 속 시원히 두 분이 화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캣맘들이 급여하는 시간에는 내보내는 양의 식으로 다행히 절충이 됐어요. -서울

## 2. 교육·홍보

우리 지역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은 캣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TNR 사업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구로구에서도 이 캠페인을 몇 년째 해 오고 있었기에 홍보문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 홍보문을 프린트하여 주민분들께 나눠드리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 서울 구로구

온천천에서 부산시와 온천천에 속해있는 각 구청의 합동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온천천에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배변봉투와 목줄을 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자 부산시에서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도 함께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되어 동물보호감시원들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이 온천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변봉투와 휴지를 나눠주며 캠페인활동을 펼쳤습니다. - 부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또한 동물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을 동물단체의 반려동물문화교실에서 강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현장과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달라서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부딪히고 동물학대 현장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 강의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부산, 7월4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반려동물문화교실

※ 참고자료: 서울시 구로구의 TNR 사업 홍보문

### 길고양이 문제, TNR로 해결합니다.

시끄러운 발정음, 싸움소리, 쓰레기 봉투 훼손의 문제등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고 길고양이의 복지를 위해서 tnr(중성화)은 필요합니다.

◆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안락사시키는 정책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포획/안락사 방법은 오랜 연구와 관찰결과 실제적으로 길고양이의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지역에서 포획 후 안락사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지역의 길고양이가 유입되는 「진공효과」와 암컷의 출산율이 높아지게 되어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습니다.

◆ 예기치않게 쥐들이 과도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포획/안락사를 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이 우려 될 뿐만 아니라 쥐들이 다시 나타나 왕성하게 번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길고양이 숫자를 유지하면서 길고양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 TNR은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인정받고 있는 길고양이 관리방법입니다.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TNR 만이 주요 선진국에서 검증된 성공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장 인도적인 방법입니다. TNR 이란 포획-중성화(불임수술)-방사를 뜻하는 국제적인 공용어입니다.

◆ 길고양이를 중성화하지 않으면 길고양이의 폐사율이 높아집니다.

길고양이는 1년에 2-3회, 한번에 4~6씩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성화 되지 않은 고양이 한 마리가 1년에 18마리의 새끼를 낳게 되어 몸이 쇠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에 따라 전염병이 발생해 집단 폐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고양이를 중성화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길고양이의 생명률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서울시 정책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TNR 사업을 2008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심속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구로구 보건소(지역보건과) ☎ 860-2428

### 3. 상담·갈등조정을 위한 개입

● 제가 사는 동 근처 세탁소 지붕에서 고양이가 뛰어다녀서 가게 주인 분이 너무 싫어한다고 걱정하는 캣맘의 글이 폐북에 올라온 글 보게 됐어요. 주인이 세탁소 주변에 나프탈렌 뿌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에게 의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입하게 됐지요.

다른 캣맘이 “그 아저씨 동물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긴장했는데, 가서 명예감시원증을 내밀고 말을 걸면서 “제일 좋은 해결방법은 지붕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원천봉쇄가 어렵다면 지금 있는 녀석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성화하여 방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득했어요.

아저씨가 가만히 듣더니 “없앨 수는 없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애기 위해 해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고, 한 번 없앤다고 실제로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답했지요. 처음에는 아저씨가 좀 적대적이었지만, 덜 설치하고 포획하고 풀어주느라 몇번씩 왔다갔다하면서 인사하다 보니 나중에 그 과정을 다 보고는 추운데 고생 많다며 기다릴 때 세탁소 안에서 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TNR 안내문을 세탁소 벽에 붙여달라고 한 요청까지 들어주셨고, 아직도 붙어 있네요. 처음에 명감이라고 하면서 예의바르게 접근했던 것과 먼저 그쪽 얘기 들어드린 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능한 선에서 대안 제시해 드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서울

● 산속에 개농장이 있다고 하여 구청 동물보호감시원과 제보자 등과 함께 현장을 갔으나 적용할 수 있는 법이 한계가 있어 몇 가지 주의만 주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개농장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제보자분은 엄청 화를 내셨고 구청의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중간에서 개농장과 우리 동물보호법의 현실에 대해 제보자를 이해시켜드리고 중재를 하여 겨우 마무리를 했어요. - 부산



● 어느날 공무원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철역 근처 은행 빌딩에 고양이들 밥주는 캣맘이 있는데 빌딩 외관을 훼손시킨다는 민원이 있었나봐요. 그로 인해 쌍욕도 오고가고 갈등이 좀 격해진 상황이라는데, 마침 그날 공무원이 일정이 안 되어 내게 부탁을 한 거죠. 먼저 그쪽 당사자 분 소개를 받아 통화를 하고, 드디어 빌딩 경비과장과의 통화를 하게 됐는데 화내고 협박하고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소수인가 다수인가 따져보면,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길고양이 혐오가 다수의 편견, 왜곡일지라도 일단 최대한 그분 입장에서 얘기 듣고 화가 누그러지도록 기다렸어요. 그런 후 캣맘과 경비실의 합의점을 찾도록 유도했지요. 경비실에서는 시일을 주기로 했고, 캣맘 분은 반드시 TNR을 하여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로 했어요. - 서울

## 4. 우리동네 동물복지 감시

● 도로를 지나가다가 제가 7마리를 TNR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경비원에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확인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물었죠.

경비원과 같이 내려가서 살펴보니, 여기 건물 실내 천장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곳 TNR을 많이 진행했다, 혹시 귀커팅 안 된 애들 있으면 연락달라”고 해서 2마리를 추가로 더 TNR했어요.

밤에 11시 넘어서 그 빌딩에 밥을 주다가 경비아저씨한테 들킨 적도 있는데, “지난번에 인사했던 명예감시원인데 수술하고 방사한 애들 밥 주면서 관리해야 해서요” 했더니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 서울

● 길고양이가 죽은 채로 계속 발견되고 결국 밥주는 자리에서 독극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여 구청과 동물단체에 신고하고 알아본 바 길고양이들을 죽이기 위해 약을 놓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장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구청에서 동물학대는 처벌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해주어 그나마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부산

● 우리 구에 물놀이장이 유명하고 경치가 좋은 개천이 있어요. 여름 시작될 즈음 어느 분이 말 한마리가 마차를 끌게 해서 개천을 돌아오는 게 1만원이라며 매일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말이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동물학대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주인이 그늘 만들어 쉬어주고... 말 걸어보니 좋은 거 먹이려고 노력하고 그러더라고요. 동장님, 경찰 다 와서 얘기를 해봤는데 막상 당장 적용할 법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한참을 지켜보며 마차사업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저거를 카드 안 받고 현금 받으니까 세금 탈세로 신고를 해야 되나’ 등등 별 걱정을 다하다가, 자꾸 가서 말을 걸고 읍소를 했어요. 마음 아프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결국 한 달 정도 하시다가 자진해서 가셨는데 슝슝했죠. - 서울



●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아파트의 공고문을 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부당함을 항의하고 해당 구청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알렸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나 벌금은 불법이라는 동물단체와 구청측의 얘기에 공고문을 바로 뺐습니다. - 부산

04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의 미래 그리기



● 법에 '위촉해야 한다'가 아니라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지자체에서 위촉을 미루거나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도 보이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법이 명예감시원 위촉을 의무화하는 길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관에서 좀더 적극 위촉을 해 주고 서로 끌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이 준비해서 우리 구 캣맘들 교육을 한다든지, 급식소 운영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주민 간담회를 한다든지, 길고양이 구조 및 응급처치 지역 수의사회와 같이 교육한다든지, 소방관과 만나 동물보호 정책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교육,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 중에 등록제 홍보 캠페인 같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두어번 하고 그칠 경우 실적 수를 쌓고 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TNR을 실시하는 시기에 동을 돌아가며 TNR 사업 홍보 집중캠페인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금 더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동물보호감시원들이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여 새로운 동물보호감시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줄 수 있고, 동물보호감시원은 자신의 권한을 활용하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는 이러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만큼 역할을 해내고, 미래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우리 지역의 든든한 동물복지 지킴이, 동물보호제도의 정착을 돕는 도우미, 동물과 사람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이끄미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23호, 2015.1.2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약총괄과) 044-201-2355, 2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완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②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그 밖에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들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들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들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 1.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구·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들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

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물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제3조제4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4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제11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제4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4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4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4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2012.7.1.] 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시행일2013.11.] 제12조(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들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들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소유자들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놓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중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지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

2. 유실·유기동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3. 제25조제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4. 제27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5. 제29조제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6. 제33조제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및 그 종사자

7.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제44조제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44조제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44조제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5.)*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제14조제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

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14조제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14조제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장 동물실험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이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 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제4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기준·절차 및 인증농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행위
2. 제29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제31조(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5장 영업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用)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동물장묘업(動物葬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② 제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3.3.23.)*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3.24.)*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제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징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34조(영업의 신고)**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1. 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영업의 승계) ① 제33조제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자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을 준용하되, 제33조제3항 중 "등록은 '신고'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3.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4.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5.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교육) ① 제32조제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

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보칙

제39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출입·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출입·검사 목적
-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
-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 출입·검사의 범위 및 내용
- 제출할 자료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동물보호영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영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영예감시원(이하 "영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영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영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자
-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제4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제6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 제29조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
-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제44조(연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신고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1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 제9조2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③ 제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4.2.14.] 제47조

## 부칙 〈제10995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된 부분)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호, 제45조제1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보호시설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기동물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기동물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을 신고한 자료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93)까지 생략

②94)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7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8항·제9항, 제1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제2항·제7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3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95)부터 ⑦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37호, 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051호, 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2 및 제47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512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지신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3023호, 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12.3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 044-201-2355, 2357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用) 목적으로 기르는 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상적 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7.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 기관
14.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1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상적 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7.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 기관
14.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1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복지위원회를 대표하며, 복지위원회 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소장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⑤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복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공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카드와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2012.7.1.]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8조(보호비용의 징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 통지서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10조(동물실험 금지 동물)**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국민안전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인명구조견
3. 경찰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4.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5.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상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일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개선을 할 수 없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해당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 및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동물장모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신고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 한 행위를 할 경우
- ③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④ 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권장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한 고시
4. 법 제2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의 접수
7.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
8.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受理)
9. 법 제39조에 따른 출임·검사 등
10. 법 제4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촉 해제, 수당 지급
11.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및 정보의 공개
13. 법 제4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행일:2013.1.1.] 제16조제12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관련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

**제1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
  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
  3. 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신청
  4. 법 제31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지위 승계 신고
  5. 법 제3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신청
  6.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
  7.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
-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3613호, 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관련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 및 별표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273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같은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까지 생략  
(3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4항, 제12조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 및 제12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33)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160호, 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7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35호, 2014.1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부칙 (제25919호, 2014.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간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4.2.11) [시행일:2014.8.14] 제2호다목 및 라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외2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업권의 악화로 사업이 중단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호	30	50	100
나. 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2호	10	20	40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3호	10	20	40
라. 법 제9조외2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4호	30	50	100
마.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5호	0	20	40
바.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6호	0	20	40
사.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7호	0	20	40
아.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8호	5	10	20
자.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9호	5	7	10
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3항에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0호	30	50	100
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1호	30	50	100
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육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2호	30	50	100
파.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3호	30	50	100
하. 영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4호	10	20	40
거.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5호	10	20	40
네.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6호	10	20	40
더.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7호	30	50	100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8호	10	20	40
머.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9호	10	20	4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1.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영역총괄과) 044-201-2355, 23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로서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축산사조업"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대표로서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 ③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스포츠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포츠오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⑤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4.>**
- ⑥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4.>**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영상물"이라 한다)에 가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제5조(동물운송차)**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8.>**

**제6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가스법, 약물 투여

2.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撃法), 충격법(銃撃法), 자격법(刺撃法)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외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도세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③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일:2012.7.]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보살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못 쓰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제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 ⑥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신고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1년 동안 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⑦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

항을 말한다.

㉔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㉕ 제7조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소유자가 이미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재항제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동물판매업자
-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② 제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신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기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 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신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판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제11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3조제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 소유자의 성명
- 소유자의 전화번호
-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의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표식장소에 방사(放射)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보호조치 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월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제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법 제15조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위촉한다.

-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법 제4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사원으로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촉을 받은 사람
-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수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동물보호센터는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제항부터 제5항가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공고)** ①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항 단서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비용의 납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항에 따라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속총칙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법 제22조제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법 제21조에 따른 기준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법 제24조 각 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 제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되, 심의 결과 동물실험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면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제24조(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른 동물

실험시험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연구인력 3인 이하인 경우
-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참여하는 동물실험시험기관 간에 윤리위원회의 공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 실적)** 동물실험시험기관의 장이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6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 의사
- 영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험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된 사람
  -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동물실험시험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항의 추천을 의뢰 받은 민간단체는 해당 동물실험시험기관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인 이상을 해당 동물실험시험기관에 즉시 추천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함께 법 제27조제4항에 적합하도록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설치를 통지한 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험기관의 장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험기관에 재직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 해당 동물실험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 해당 동물실험시험기관 총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 해당 동물실험시험기관에 실험동물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 해당 동물실험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 법 제29조제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소,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법 제29조제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인증의 신청)**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8.>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 제32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절차 및 방법)** ① 검역본부장은 제31조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면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하고, 별표 6의 인증기준에 맞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항의 인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그 밖에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장 또는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식육·포장육은 그 생산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4.8.>

- 동물을 도살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동물 운송 차량을 이용할 것
- 동물을 도살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살방법에 따를 것
- 제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34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승계신고)** ① 법 제31조제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8.>

-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승계받은 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1부
-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 검역본부장은 제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2조제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법 사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6.>

-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열교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場)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제35조제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 동물수입업: 제35조제항에 따른 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동물생산업: 제35조제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 인력 현황
-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제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시설

4. 영업장의 소재지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의 경우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1. 등록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9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동물생산업의 신고 등)** ① 동물생산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물생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② 제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34조제3항제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항 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항에 따른 신고가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물생산업 신고(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동물생산업 신고(변경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시설

4. 영업장의 소재지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확인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④ 제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0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33조제3항제1호·제4호 및 별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자·동물판매업자·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44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37조제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생산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② 제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③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제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의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시정명령)**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4. 질병에 걸리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제47조(동물보호감시원의 종류)**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종류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48조(동물 등의 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동물운송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16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 2015년 1월 1일

4. 제7조에 따른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6. 제9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7. 제19조 및 별표 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8. 제24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2015년 1월 1일

9. 제26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2015년 1월 1일

10. 제25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11.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2015년 1월 1일

12. 제35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업의 범위 및 사실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38조에 따른 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14. 제41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 등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1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

[본조신설 2015.1.6.]

**부칙 (제261호, 2012.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8조·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시설 계약을 맺은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제3조(영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으로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을 받은 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9호, 201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8호, 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 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 2014.2.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 2014.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 2014.8.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족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족방역관(검역관)증, 가족방역사증, 말초연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 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9호, 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족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 서식**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3조 관련)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제8조제2항 관련)

[별표 3] 목줄과 인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19조 관련)

[별표 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0조 관련)

[별표 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제32조제3항 관련)

[별표 8]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제33조제2항 관련)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법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별표 11] 행정처분기준(제45조 관련)

[별표 12] 등록 등 수수료(제48조 관련)

[서식 1] 동물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서식 2] 동물등록증

[서식 3]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4]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서식 5]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서식 6] 동물보호 공고문

[서식 7]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서식 8] 보호동물 관리대장

[서식 9] 비영정수통지서

[서식 10]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

[서식 1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서식 1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서식 1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

[서식 1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

[서식 15] 영업 등록 신청서

[서식 16]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록증

[서식 17]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서식 18]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록(변경신고))관리대장

[서식 19]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등록증, (동물생산업)신고확

인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20]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등록사항, (동물생산업)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21]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서식 22] 동물생산업 신고서

[서식 23] 신고확인증

[서식 24] 동물생산업 신고(변경신고) 관리대장

[서식 25]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26]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서식 27] 동물보호감시원증

[서식 28]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서식 29] 개체관리카드

[서식 30] 동물장묘업 실적 보고서



## 참고자료 2.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모음

### ■ 외출견 / 유기견 / 야생견 구별법

	외출견일 가능성 높음	유기견일 가능성 높음	야생견일 가능성 높음
사람의 흔적	사람이 표시한 흔적이 있음 - 목줄 / 미용	사람이 표시한 흔적이 남아 있음 목줄 / 미용	없음
출몰지	인가 근처	인가와 멀지 않은 변경	산, 폐가, 인적이 드문 거리
성격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음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낯선 이를 잘 따르기도 하고, 익숙한 대로 다닌느라 무관심한 경우도 있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약간 경계할 가능성이 있음 개가 불안하고 당황한 듯 보인다면 유기 또는 유실된 것 일까 안 봐줄 것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는 편 다가가면 쫓거나 공격할 가능성 있음
주변 사람의 반응	주변의 가게나 동물병원에서 '누구네 집 개'라고 알고 있는 경우 많음	주변에서 잘 알지 못하거나 '예전부터 주인 없는 야생 개로 확인'	주변에서 잘 알지 못하거나 '예전부터 주인 없는 야생 개로 확인'
건강과 위생	건강하고 깔끔한 편 중성화가 되어 있음	배회 기간에 따라 다름 노견이거나 기침, 중앙 등 습개 확인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유기됐을 가능성 있음	대체로 건강해 보이는 편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말랐을 가능성
먹이를 건넬 때의 반응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받아먹고 친근함을 보임	대체로 약간 경계하면서 받아먹거나, 먹은 후 매우 따를 가능성 있음	거의 받아먹지 않거나, 먹이만 먹고 황급히 도망감
기타	종이 있을 가능성		믹스견 비중 높음 무리지어 다닐 수 있음

### ■ 반려동물 판매업소 점검 시 참고자료

<서울시 제공 동물관련영업소 점검 양식 시안>

#### 동물관련영업소 지도-점검표

##### □ 업소현황

등록(신고)번호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점검결과

구분	점검내역	결과
<b>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제43조 관련)</b>		
시설 기준	동물보호법제32조, 동물실험규칙제35조제2항 (별표 5)적합 유무	
일반 기준	가.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 관리되어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이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병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늑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태어나 갓을 먹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과 원한 기생충 및 외부충,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사칙의 개체별 건강검진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도개, 기니돼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마. 동물에게는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며, 용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준수 사항	가. 영업자는 입수, 판매되는 동물에 대해서 그 연령을 기록할 때 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등록 또는 시장 구수 구장장의 지정명령, 사실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무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적체 없이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개: 고양이: 2개월 이상 2) 그 외 동물: 이유 후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라. 동물판매업자는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동물판매업자는 '소피카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판매 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례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영업소 및 주소, 전화번호 2) 동물의 출생일자(일자를 모르는 경우 그 월)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동물의 출생,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측정 사항 4) 예방접종, 약품주어 등 수의사의 진료기록 등 5) 동물의 동행인 경우 그 동행내역, 판매일 및 판매금액 등	
준수 사항	가.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 시 해당 동물의 습성, 특질 및 사육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 등을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동물등록 대상동물 판매시 동물등록 발급 기간 통상세 설명)	
	다.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 수입일 등 검역관련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라. 동물생산업자는 사육 관리 중인 모든 번식용 동물에 대한 관리카드에 번식과 및 출산일자, 출산동물 수 등 번식 및 출산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동물장묘업(제43조 관련)	
	시설 기준	동물보호법제32조, 동물실험규칙제35조제2항 (별표 5)적합 유무
준수 사항	가. 동물 사체를 화장 또는 전소장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동물 초유와 예기 동물장묘 등록번호, 입소일, 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처리일자 및 처리후 잔여물 대한 처리방법 처리방법 등을 기록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화장 및 전소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동물장묘업자는 별지 제30호사칙의 동물장묘업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범 조사 등에 관한 방법' 제10조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때 그 결과를 적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 및 별도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행측산식용무장원이 경하여 고사하는 경계선사 동물 화장시설은 매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장묘시설은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업소 확인(입회)자 : 적위	성명	(인)
점검자 - 동물보호감시원(담양공무원 등)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00000 구청장 귀하

### ■ 유기동물보호소 점검 시 참고자료

<서울시 제공 유기동물보호소 점검 양식 시안>

####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표

##### □ 업소현황

지정번호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점검결과

구분	점검내역	결과
<b>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시행규칙제15조제1항 관련)</b>		
일반 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분양을 위한 동물 보호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입수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위생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배수 시설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용출수는 제외한다.	
	라. 보호동물 인도지원 방법으로 자립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습·치료와 관련된 별도의 처리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동물 사체를 화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 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제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도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재래의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육실의 외부에 노출된 경우, 적사방진,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입문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폐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질병설 위험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실은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육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별 기준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출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밖의 반려동물들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획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시설의 바닥이 평평 함으로 된 경우 절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3) 시설의 재질은 절초, 조목 및 전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물에 의해 쉽게 부식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년 이상 쌓은 경우 중력에 의해 누너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물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개별 기준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이러거나 중성화되어 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가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늑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태어나 갓을 먹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 출생, 품종, 나이, 재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보호견되는 발분봉지가 함입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 발분사 방분자 살생, 방분원시, 방분봉지, 먹이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점검내역	결과
개별 사항	가.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양주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조자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아니한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보호동물 입수 시 개체별로 별지 제7호사칙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다. 보호 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을 동물 참고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세분별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리. 보호 동물의 분할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세유기 말기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에게 분할해서는 아니 된다.	
	미.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승인과 1월 이상의 입회하여 수의사가 시술하도록 하며, 이월처 서울 후 신청자 직접 착용하는 동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피.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자살은 별도의 명단기록에 보관 후, "자기몰락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점검 최종 결과	기라계략 회만행위 원정지 최중의정	

20

업소 확인(입회)자 : 적위	성명	(인)
점검자 - 동물보호감시원(담양공무원 등)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00000 구청장 귀하

## ■ 길고양이가 있는 곳에 '쥐약을 놓는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쥐약(구서용 약품) 투입 시 어린이, 반려동물 및 서울시에서 보호하는 길고양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요청 근거〉

가. 길고양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예: 서울시)에서 중성화수술 후 제자리 방사를 하여 개체수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연 강동구를 비롯하여, 서울시도 공원을 중심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서는 쥐약 등 약물 혹은 도구를 이용하여 동물을 살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쥐약을 이용한 고양이 살해는 위에 해당되며, 경찰신고 대상 범죄입니다.

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 조치 없이 구서용 약품이 살포된다면, 유사 시 이들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해의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이유로 귀 기관의 쥐약(구서용 약품) 투입 시, 모쪼록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맞게 보다 철저하고 인도적인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사람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을 위해 현장에서 물심양면의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민 분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귀 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살충, 살균, 구서를 위한 방역속독 실시 지침, (질병관리본부, 2007) 중 쥐의 방제 편』

- 음식물과 구별하기 위해 미끼 먹이(독이 든 부분)는 청색이나 흑색으로 염색한다.
- 직경 6cm의 구멍이 있는 적당한 용기의 미끼통을 사용한다.
- 미끼 먹이를 설치할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 어린이와 애완동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미끼 먹이를 만들 때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결정분말일 경우에는 마스크나 방독면을 착용한다.
- 타 동물의 2차 독성을 막기 위하여 살서작업 후 미끼 먹이를 철저히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 길고양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쥐약 설치 틀

: 독극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고려한 틀을 설치해야 함. 직경 6cm 이하의 원형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외에는 막혀 있어 쥐나 생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함.

### 〈참고 사진〉

#### 쥐트랩

정밀하고 위생적인 환경



정밀하고 안전한 구서트랩  
쥐가 구멍이나 벽을 뚫고 이동하는 습성을 이용하여 설치하세요



※ 적절한 예 : 직경 6cm 이하의 구멍이 뚫려 있고, 사방이 막혀 있음.

※ 적절하지 않은 예 : 사방이 열려 있어 어린이 및 다른 동물의 접근을 막지 못함.

